##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성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3409

발의연월일: 2021. 11. 18.

발 의 자:김성원·박대수·박덕흠

서일준 • 이채익 • 임이자

조명희 · 최춘식 · 추경호

태영호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법률 용어는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 야 함.

그러나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,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.

이에 현행법의 '보철구'를 '보조기구'로 정비하여 어려운 한자식 용어의 사용을 지양하고,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이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0조).

법률 제 호

##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인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1항제2호 중 "보철구(補綴具)"를 "보조기구(補助器具)"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0조(공무상요양비) ① (생	제20조(공무상요양비) ① (현행과
략)	같음)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약제(藥劑), 치료재(治療材)	2
및 <u>보철구(補綴具)</u> 지급	보조기구(補助器具)
3. ~ 6. (생 략)	3. ~ 6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